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인정 근거마련〉

■ 한병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423호)

2024. 11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유상조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한병도의원 등 17인
2. 발의연월일 : 2024. 7. 31.
3. 회부연월일 : 2024. 8. 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·제주·강원·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).

III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·조직 및 행정·재정 등의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의 근거를 「지방자치법」에 규정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<u>제주특별자치도</u> 의 행정특례 제197조(특례의 인정) ① (생략) ② <u>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</u> 지위·조직 및 행정·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	----- ----- <u>특별자치도</u> 의----- 제197조(특례의 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,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부 칙	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

현행법은 서울특별시의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위·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위·조직 및 행정·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

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.

현행법의 서울특별시의 특례의 인정에 관한 규정은 1988. 5. 1. 시행된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규정되었으며,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인정에 관한 규정은 각각 2006. 1. 11. 및 2011. 5. 30. 시행된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규정되었음²⁾.

해당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「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위·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고 있고,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위·조직 및 행정·재정 등의 운영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고 있음.

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「강원특별법」”이라 함) 및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「전북특별법」”이라 함)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³⁾.

1) 「지방자치법」

제174조(특례의 인정)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·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

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·조직 및 행정·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

2) 참고로,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. 7. 1. 출범하였고,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. 7. 1.에 출범하였음.

3) 참고로,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. 6. 11. 「강원특별법」의 시행으로 출범하였고,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.

다만, 현행법은 특례부여 근거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및 시·도/시·군·구간 기능배분 등을 의미하는 ‘행정체제의 특수성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,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례부여 근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7조제2항의 취지는 ‘행정체제의 특수성’을 갖춘 특별자치시·도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34

1. 18. 「전북특별법」의 시행으로 출범하였음.